

# 연방국가 해양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관한 연구

## -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조동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Ocean Policies under Federal States

## - On the Basis of U.S., Canada and Australia -

Dong-Oh Cho\*

\*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핵심용어** : 유엔해양법협약, 아젠다21, 연방정부, 해양정책, 통합관리

**Abstract** :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ustralia, have been initiated in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through enactment of oceans laws and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since UNCLOS and Agenda 21. However, the oceans policies of U.S., Canada and Australia show some limitations in view of integration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ederal government system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have not a leading agency for integrated oceans policies, have not include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federal government oceans policies, and have not addressed support to private oceans sector in their ocean policies. Instead, those countries have established ad-hoc oceans committee to achie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oceans management.*

**Key Words** : *UNCLOS, Agenda 21, Federal government, Ocean policy, Integrated management*

### 1. 서론

20세기말 유엔 및 주요 해양국가들은 다가올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규정하고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촉구하였다. 그 일환으로 유엔은 1998년을 해양의 해(YOTO : Year Of The Ocean)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은 21세기 신 해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여년에 걸친 노력 결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였다. 1992년에 개최된 리우정상회담에서는 의제21의 17장을 채택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 및 연안의 통합적 관리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인 흐름의 주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해양국가들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해양자원의 이

용, 보전, 개발에 관한 정부조직, 관련법, 국가정책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 해양정책에 있어서 통합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방정부체제 국가들의 통합해양정책 시도는 여타 비연방국가의 해양정책에 비하여 많은 특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이들 국가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sup>1)</sup>의 해양공간에 관한 관할권이 분명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세계 해양정책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이 지닌 특성 및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2. 통합해양정책의 지향

20세기말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여 유엔 및 주요 해양

\* 종신회원, oceancho@gmail.com, 051-410-5275

1) 이들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주정부하위의 정부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주정부를 지방정부로 칭함.

국가가 마련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이는 국가 간 해양의 이용, 보전, 개발에 관한 질서(신 해양 질서)를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아젠다21의 17장<sup>2)</sup>에서 각 국가로 하여금 해양의 이용, 보전, 개발에 있어서 통합적 관리(Integrated management)를 권고한 것이다. 또한 많은 해양학자들이 해양에서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데 육지에서와는 달리 어느 한 분야의 행위는 여타 부문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전문(Preamble)에서도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3)</sup>

미국, 캐나다, 호주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아젠다21의 17장의 권고에 따라 해양 및 연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해양정책(Integrated ocean policy)의 수립에서 여타 국가들을 선도하여 왔다.

### 2.1 미국

1960년대의 미국은 연안의 과도한 개발 및 인구집중, 갯벌의 매립, 수질오염 및 해양서식지의 파괴, 연안접근의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연안 및 해양관련 정부정책은 다양한 정부조직에 의해 분산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은 특별위원회인 스트라턴위원회(Stratt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관련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권고토록 하였다. 1967년 동 위원회는 보고서(Our Nation and the Sea)를 통해 당시의 해양정책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즉, 미국의 해양정책은 i)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한 책임의 분산, ii) 상이한 정부기관에 의한 업무의 중복, iii) 다양한 정부기관간의 업무조정 미비, iv) 비해양관련 기관에 의한 해양관련업무 추진 및 타 기관과의 비협조, v) 분산정책에 의한 통합정책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된 해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 위원회는 내무부(DOI)의 수산업부, 국가과학재단(NSF)의 씨그랜트프로그램, 상무부(DOC)의 해양환경업무, 교통부(DOT)의 연안경비대(USCG) 업무를 통합하여 독립된 조직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닉슨 행정부는 해양대기청(NOAA)을 설립하였으나 연안경비대를 통합하지 않았으며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하지 않고 상무부 산하에 두었다.

그 후 미국에선 통합해양정책의 추진을 위해 해양대기청(NOAA), 연안경비대(USCG), 해사청(MARAD), 내무부(DOI) 산하의 해저석유개발, 해저자원개발, 수산 및 양식 업무 등을 통합한 해양부(Department of the Oceans)의 설립 노력과 내무부(DOI), 농림부(DOA)의 수립 및 토양보전업무, 상무부(DOC)의 해양대기청(NOAA) 등을 통합한 자원부(Department of

Interior)의 설립노력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2000년 제정된 미국의 해양법(Oceans Act of 2000)은 미국의 해양정책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특별위원회로서 미국 해양위원회<sup>4)</sup>(USCOP)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설립된 후 18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동 보고서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정책 집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해양위원회(USCOP)는 2004년 보고서(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현 미국의 해양정책은 20개 이상의 연방정부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며, 140여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 규정 및 집행되고 있어 사실상 1967년 스트라턴위원회가 진단하였던 당시와 비교하여 다를 바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통합해양정책(Integrated Ocean Policy)의 수립과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Ocean Policy Trust Fund)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해양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부시행정부는 새로운 해양정책(Ocean Action Plan)을 수립하였으나, 동 해양정책은 해양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포함하지 못하고 통합적이지도 못하였다.

2009년 6월 12일 오바마행정부는 새로운 해양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규정<sup>5)</sup>에 의해 해양관련 부처 간에 협약서(Memorandum)를 체결하고 작업반(TF)을 구성하여 90일 이내에 국가해양정책의 수립, 이행조직, 이행전략을 위한 권고를 제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관련 행정부에는 작업반의 권고 이후 180일 이내에 종합적(Comprehensive)이고, 통합적(Integrated)이고, 생태계기반(Ecosystem-based)의 해양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령하였다. 동 작업반(TF)은 2010년 7월 19일 미국의 해양정책을 위한 최종권고<sup>6)</sup>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미국 관련 행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해양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 2.2 캐나다

캐나다는 2만여km의 해안선과 4백 70만km<sup>2</sup>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부국이다. 그러나 해양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해양정책이 19개 관련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캐나다는 효율적인 해양자원의 관리를 위해 1979년 환경부의 수산관련 업무부서를 부로 승격시켜 수산해양부(DFO)를 설립하였다. 1995년엔 교통부의 연안경비대(CCG)를 수산해양부로 편입시켰다.

캐나다는 1996년 해양법(1996 Oceans Act)을 제정하였는바, 동 법은 해양수산위원회로 하여금 캐나다의 해양정책을 평가하고 수산해양부로 하여금 국가해양전략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평가의 주요 내용은 수산해양부가 해양정책

2) Agenda 21, Chapter 17: Objectives: Article 17.5. Coastal States commit themselves to integrated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areas and marine environment under their national jurisdiction.

3)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s, ... Conscious that the problems of ocean space are closely interrelated and need to be considered as whole, ...

4) 해양위원회(USCOP)에는 정부업무의 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단지 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5)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3366

6) Final Recommendation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의 주관기관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산해양부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이 환경부, 자연자원부, 문화유산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2002년 수산해양부는 해양법에 근거하여 캐나다 국가해양전략(COS)을 수립하였는데, 정책의 기본원리는 아젠다21의 제17장의 권고를 따라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통합관리(Integrated management), 사전예방적접근(Precautionary approaches)이며, 정책목표는 해양환경의 이해 및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지원, 해양정책의 국제리더쉽 등이다.

### 2.3 호주

호주는 2만 5천여km의 해안선과 7백만km<sup>2</sup>의 EEZ에 풍부한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해양부국이다. 연간 해양산업은 약 380억 달러로 GDP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원의 해역을, 주정부는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연안해역을 관할하는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 1994년 호주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통합해양정책 수립에 노력하여 왔다. 1996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을 지지하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1998년 호주해양정책(AOS : Australia's Ocean Policy)을 수립하였다. 1998년 호주 해양정책은 해양생태계 완전성 유지, 해양공간의 다양한 통합적 이용,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의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 및 캐나다와 달리 국내 해양법을 제정하지 않고 통합해양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세미나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여타 정부부서의 협력을 구하였다.

## 3. 통합해양정책의 평가

### 3.1. 미국

현 미국 행정부의 해양정책 수립을 위해 작업반(TF)이 권고한 사항은 크게 해양정책의 방향, 해양정책 추진조직의 협력방안, 이행전략인바, 근본적으로 현 정부 조직의 개편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합해양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양행정조직의 통합은 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작업반이 권고한 사항 중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해양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된 정책을 위해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mmittee)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동 업무를 대통령 직속의 환경위원회(CEQ :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에서 맡고 있다. 그 이외에 작업반은 해양자원관리법부처위원회, 해양과학기술법부처위원회, 해양과학자문위원회, 거버넌스조정위원회 등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많은 해양학자들(Juda, 2003; Wescott, 2000; Foster et al., 2005)이 통합해양정책의 추진을 위한 요소로 조직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67년 스트라턴위원회(Stratton Commission)의 권고 이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고 있지

못한바, 이는 미국 의회 내 60여개에 이르는 해양관련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140여개의 해양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20여개의 행정부서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전문과 아젠다21의 제17장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많은 해양학자들(Juda, 1999; Miles, 1999; Underdal, 1980; Cicin-Sain, 1993)이 해양은 특성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적인 통합해양정책이 아니었으며 기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었다. 즉, 연방정부인 상무부 산하의 해양대기청(NOAA)의 정책수준에 불과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해양정책은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작업반(TF)이 통합해양정책을 위해 권고한 사항은 구체적인 해양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책방향 수준이기 때문에 1967년 스트라턴위원회(Stratton Commission)와 2004년 미국해양위원회(USCOP)가 권고한 통합해양정책의 수립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3.2. 캐나다

1996년 캐나다해양법은 수산해양부(DFO) 장관에게 연방정부의 관련 부서, 지방정부, 원주민, 기타 해양관련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통합적인 국가해양전략을 수립하고<sup>7)</sup> 동 전략의 하위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할 의무<sup>8)</sup>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수산해양부로 하여금 여타 정부부서가 통합적인 국가해양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산해양부가 설립되어 있고 통합적인 해양정책수립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 해양정책은 연방정부 해양관련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자연자원부도 자신이 해양정책의 주관부서라고 주장하고 문화유산부도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등 해양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연방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해 제도적 및 재정적인 권한이 적어 지방정부의 해양관련 정책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못하다. 캐나다 헌법은 지방정부에 연안육역에서의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있어, 비록 그 행위가 연안해역의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McDorman, 2010). 따라서 캐나다 국가해양전략(COS)도 연방정부의 해양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관할권인 연안육역의 정책 역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산해양부가 통합해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련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조화의 추구인바, 수산해양부가 설립한 해양자문위원회(DFO Advisory Council on Oceans)와 수산양식장관위원회가 설립한 해양대책그룹(Oceans Task Group) 등이 그 예이다.

7) Section 29 of 1996 Oceans Act

8) Section 31 of 1996 Oceans Act

### 3.3. 호주

호주 연방정부는 부단위의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환경유산부(MOEH)내의 국가해양정책국(NOO)이 해양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단위로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주정부는 해양관련 각종 위원회를 설립하여 통합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해양장관위원회(NOMB)를 설립하고, 산업계, 학계, 지역공동체,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해양자문그룹(NOAG)을 설립하여 국가해양장관위원회를 자문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 등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지역해양정책조정위원회(RMPSC)를 설립하여 지역 해양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감시를 하고 있다.

호주해양정책(AOS)은 지역적으로 지방정부 관할해역인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연안해역은 대상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3마일 이원의 해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해양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4. 연방정부 해양정책의 특징과 한계

### 4.1. 해양정책 주관부서 부재

미국, 캐나다, 호주의 연방정부에는 아직까지 해양정책을 위한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해양대기청(NOAA)이 존재하나 부단위가 아닌 상무부 산하의 청단위이다. 해양관련 정부부서로는 해양대기청 이외에 환경청, 내무부, 교통부, 국토안보부의 연안경비대 등 거의 모든 부서가 해양과 관련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산해양부가 캐나다 해양법상 해양정책의 주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관기관으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통합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단위 조직인 환경유산부(MOEH)내의 국가해양정책국(NOO)이 해양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캐나다, 호주는 선진해양국이며 통합해양정책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수한 관할권 관계와 국회의 복잡한 이해관계<sup>9)</sup> 때문으로 여겨진다.

### 4.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해역 이원화

해양자원에 관한 보전, 이용,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해양자체 보다는 연안육지(연안육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구의 집중,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산업단지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서는 지방정부(주정부)의 관할해역인 3마일 이내의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과 관련된 정책프로그램 즉,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통합하는 정책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연안관리법(CZMA)을 제정하여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안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할 경우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함

으로써 간접적인 연안육역의 해양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미국과 동일하게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까지의 연안해역은 주정부가 관리하고 연방정부는 3마일 이원의 해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3마일을 기준으로 해역관리의 이원화가 발생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지방정부의 관할해역 및 관련정책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실패를 야기 시키고 있다(Tsamenyi, 2010). 캐나다의 경우, 비록 전 연안 및 해양이 연방정부 소관이나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해양관할 사항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연안육역의 해양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은 연안육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연방정부 관할 소관인 해역범위내의 해양정책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4.3. 광역해양생태계기반의 해양관리

미국, 호주, 캐나다 정부는 연방정부의 관할해역을 대체로 광역해양생태계기반관리(Large marine ecosystem-based management)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진부터 광역해양생태계기반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오바마 행정부의 작업반(TF)의 최종권고에서도 연안·해양공간관리<sup>10)</sup>를 독립된 항목으로서 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호주는 해양생태계기반관리 및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7개의 광역해역을 지정하여 지역실행계획(RMP)을 수립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넓은 관할해역의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광역해양생태계기반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4.4. 민간부문 산업육성정책의 미흡

미국, 캐나다, 호주의 해양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부문의 산업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으로서 공공의 해양자원 관리에 치중하고 민간부문의 산업육성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 5. 결론 및 시사점

유엔해양법협약과 아젠다21의 제17장에서 해양 및 연안의 통합적 관리를 규정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해양국가들은 해양관련 조직과 정책의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국가들의 해양관련 정부조직의 통합은 의회 및 관련정부부처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통합 역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해역관할권의 이원화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정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관련부처, 지방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과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의 연방국가와는 달리 바다 및 강 등 모든 공

9) 미국 의회에는 해양관련 60여개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있음.

10) 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유수면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이들 공유수면을 매립 및 개발하는 정책 역시 중앙정부에 의해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우리나라는 해양에 관한 정책을 다양한 정부부서에 의해 분산·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을 이루었고 통합해양정책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통합조직인 해양수산부가 해체되었다.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 해양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거 해양수산부보다 더 통합된 조직의 설립이 요구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B00001).

## 참 고 문 헌

- [1] Cicin-Sain, B.(1993),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21: p. 43.
- [2] Foster, F. M. Haward and S. Coffen-Smout(2005), Implementing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 Australia's southeast regional marine plan(SERMP) and Canada's eastern Scotian shelf integrated management (ESSIM) initiative, *Marine Policy*, 29: p. 405.
- [3] Juda, L.(1999), Considerations in development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governance of large marine ecosystem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0: p. 125.
- [4] Juda, L.(2003), Changing National Approached to Ocean Governance : The Unti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4: p. 187.
- [5] McDorman, TL.(2010), Canadian Oceans Policy-Making : Notes and Comments, In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Oceans Policymaking, Taipei, Taiwan, pp. 7-8.
- [6] Miles, EL.(1999), The concept of ocean governance: evolution toward the 21st century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ocean use, *Coastal Management*, 27: p. 30.
- [7] Tsamenyi, M.(2010), Australian Oceans Policymaking, Taipei, Taiwan, pp. 7-8.
- [8] Underdal, A.(1980), Integrated marine policy - What? Why? How? *Marine Policy*, 4: p. 169.

- [9] Wescott, G.(2000), The development and initial implementation of Australia's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Oceans Policy, *Ocean & Coastal Management*, 43: p. 878.

---

원고접수일 : 2010년 10월 06일

원고수정일 : 2010년 10월 28일 (1차)

: 2010년 12월 13일 (2차)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23일